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92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배준영·조은희·양금희

정우택 • 정동만 • 윤창현

유재옥 • 유경준 • 이채익

이 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하 "배당금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피출자법인이 법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배당금등을 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임.

그런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만 배당금등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출자비율이 100퍼센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기피하고 해당 금액을 피출자법인이사내유보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 간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구간을 정 비하고 익금불산입률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액의 익금불산입) ①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	
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	
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	
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	
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	
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	1
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햣.	괴	앤
н /	711	_

	피출자법	익금
피출자법인의		
그브	인에 대한	<u>불산</u>
<u>구분</u>	출자비율	<u>입률</u>
가. 주권상장	100회 개도	100
법인(「자본	<u>100퍼센트</u>	퍼센트
시장과 금융	30퍼센트	
	이상 100퍼	<u>50</u>
투자업에 관	센트 미만	퍼센트
한 법률」에	<u>"- L</u>	
따른 주권상		
장법인을 말	<u>30퍼센트</u>	<u>30</u>
	미만	퍼센트
<u>한다. 이하</u>		
<u>같다)</u>		
	100리 세트	<u>100</u>
	100퍼센트	퍼센트
나. 주권상장	50퍼센트	
법인 외의 법	이상 100퍼	<u>50</u>
인	센트 미만	퍼센트
<u>'</u>	<u>센트 미만</u> 50퍼센트	30
	<u>미만</u>	퍼센트

2. (생략)

②・③ (생 략)

	피츠키버이	이그
피출자법인의	<u>피출자법인</u>	<u>익금</u>
	에 대한 출	<u>불산</u>
<u>구분</u>	자비율	입률
가. 주권상장		100
법인(「자본	<u> 80퍼센트 이상</u>	퍼센트
시장과 금융	50퍼센트	
투자업에 관	이상 80퍼	<u>80</u>
		퍼센트
한 법률」에	<u>센트 미만</u>	
<u>따른 주권상</u>		
장법인을 말	<u>50퍼센트</u>	<u>50</u>
<u>한다. 이하</u>	<u>미만</u>	<u>퍼센트</u>
<u>같다)</u>		
	80퍼센트	<u>100</u>
	<u>이상</u>	퍼센트
나. 주권상장	50퍼센트	00
법인 외의 법	이상 80퍼	<u>80</u>
<u>인</u>	센트 미만	퍼센트
	50퍼센트	<u>50</u>
	<u>미만</u>	퍼센트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